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5-42호

우편법시행령 제5조 및 제9조의2 제15호 규정에 의하여 도로명주소에 사용하는 우편번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5년 6월 5일

우정사업본부장

도로명주소에 대한 우편번호 조정 고시

1. 도로명주소 기준일 : 2015. 5. 26.

2. 우편번호 부여 도로명주소 현황 : 충북 제천시 내토로 1073 등 6,065,129건

o 우편번호를 부여한 도로명주소 전체분

-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 : 별표 1
- 대구광역시, 부산광역시, 울산광역시, 경상남·북도 : 별표 2
- 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충청남·북도, 강원도 : 별표 3
- 광주광역시, 전라남·북도, 제주특별자치도 : 별표 4

o 도로명주소 변경분 : 별표 5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새주소우편팀(☎044-200-8353)에 문의 또는 인터넷우체국(www.epost.go.kr)의 『우편번호 찾기(도로명/지번주소/영문주소)』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3. 도로명주소의 우편번호 사용·변경 등

o 도로명주소의 우편번호는 행정자치부가 제공한 매칭테이블 상 대표 지번의 도로명주소(도로명주소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시)에 현재의 지번 우편번호를 매칭하여 사용합니다.

o 도로명주소의 우편번호는 도로명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하거나, 도로명주소의 올바른 우편번호 사용률 인증 시 사용됩니다.

o 도로명주소의 우편번호는 안전행정부가 제공한 매칭테이블 상 도로명주소가 변경되거나, 우정사업본부가 고시한 지번 우편번호가 조정될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4. 참고사항

o 도로명주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의 도로명주소안내 시스템(www.juso.go.kr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부칙

이 고시는 2015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.